

9) 성음악위원회 및 이에 대한 편견

팬데믹을 계기로 우리 교회에서 성음악과 관계된 정책들이 체계적으로 정립될 필요가 있다고 여겨진다. 이는 구체적으로 성음악위원회의 설치와 관계되는데 교회 문헌들은 한결같이 개별 교구나 본당내에서 성음악과 관련된 기구와 교육기관을 설치하여 성음악의 전례적 가치를 보존하고 발전시키며 관계된 사항들을 사목적으로 보살펴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것을 수차례 강조해 왔다. 전례성성은 「성음악지침」에서 “사제와 평신도들, 특별히 성음악에 대한 다양한 측면에서 지식과 경험 그리고 재능을 지녀서 선발된 이들로 구성된 위원회”(118항)의 설립을 요구하고 있고, 교황청 예부성성은 전례위원회와 협력하여 “교구의 사목 전례 활동과 더불어 성음악을 발전시키기 위해 주도적인 역할을 맡는”(「성음악훈령」 68항) 교구 성음악위원회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따라서 성음악위원회의 으뜸가는 역할은 성음악 분야, 즉 전례와 성가의 관계 안에서 교구의 사목정책을 펼쳐 나가는데 있어서 교구장을 보좌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이 위원회는 단순히 각종 음악행사나 성가책 출판과 같은 기능적 역할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다.

예술행정이라는 학문분야가 있듯이 음악에도 그와 관계된 인사행정과 정책이 있기 마련이다. 교구내 성음악 발전을 위해 어떻게 정책을 수립해 나가며 교구장의 사목 방침에 따라 그 해에는 어떻게 교구 차원의 행사들을 조직적으로 수립해 나갈 것인지, 성음악 직무자의 선발 기준과 재정 지출은 어떤 기준으로 운영할 것이며 그 교육은 어떻게 운영될 수 있겠는지, 세속법과 관계된 음악 저작권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기준으로 대처할 수 있겠는지 그리고 성가나 혹은 그 직무자와 관계된 분쟁에 대해서 교구는 어떻게 본당을 지원할 것인지 등과 관계된 사목적 정책들이 교구차원에서 결정되거나 그 지침이 수립되어야 한다는 것등이 교회문헌에서 언급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오랜 기간동안 우리 교회는 이와 같은 것들을 일선 본당 사목자에게만 떠맡겨 놓거나 이와 관련된 몇몇 사제나 열성적인 평신도 개인의 활동들에만 의존해 왔다. 이로 인해 그 정책은 일관성이 없어서 본당마다 다르고 사목자가 바뀔 때마다 달라지면서 혼란을 겪어 온 것이 사실이며 한때 교회에 애정을 가지고 있었던 음악 전문가가 이러한 혼란에 실망하고 교회를 떠나면서 손실로 이어지는 일들이 지속되어 온 것도 사실이다. 적지 않은 신부님들은 도대체 지휘자와 반주자의 사례비는 어느 기준으로 적용해야 하는지 혼란을 느끼고 있을뿐만 아니라 때로는 그 기준이 전적으로 사목자 개인과의 친밀도에 의해 형성되어 지휘자나 반주자간에 위화감이 조장되기도 하며 성가대에 대한 관심과 지원도 - 이는 사실 전례의 활성화와 깊이 관계된 필수적 분야임에도 불구하고 - 전적으로 사목자가 음악 애호가나 아니냐에 의해 좌우되는 것이 현실이며, 성가대 교육을 위한 강사 초빙과 같은 일들도 전문적 지원을 받지 못한 채 본당 사목자 홀로 그 책임과 부담을 전적으로 떠안아야 하는 등, 이와 관계된 문제는 한 두가지가 아니다. 다시 말해서 성음악위원회 혹은 그와 유사한 조직조차 구성되어 있지 않다는 것은 성음악을 교회의 발전과 전례 활성화를 위한 필수 요소가 아닌 파티중에 연주되고 있으나 아무도 귀 기울이지 않는 벽지음악(Wallpaper Music)이나 필요할 때 가져다 쓰면 그만인 액세서리 정도로 취급하는 정도의 인식을 가지고 있거나 또는 성음악 정책의 사목적 책임을 방기하고 있음에 다름 아니다.

성음악은 그저 노래나 부르고 악기나 연주하는 것이 아니다. 이는 선율과 가사에 있어서 믿음의 규범(Lex Credendi) 및 기도의 규범(Lex Orandi)과 직결되는 것이어서 교우들이 어떤 전례적 기회에 교회의 어떤 가르침을 되새기게 할 것이며 어떤 말과 내용으로 찬양하도록 할 것인가

지와 관계되는 것이고 이로써 그 마음속에 믿음과 소망, 사랑과 기도,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삶 속에서 실천해 나갈 힘을 지니게 할 수 있는지 등과 관계된 전례신학적인 분야이며 그 실천적 고민들이 이천 년을 이어오면서 켜켜이 쌓여서 마치 교부들의 가르침처럼 서양음악의 뿌리를 이루면서 방대한 가르침을 쌓아 온 대단히 전문적인 분야이다. 따라서 이는 그저 단순한 음악분야가 아니다. 이와 관련하여 많은 이들이 지니고 있는 중요한 한 가지 오해는 성음악위원회가 결성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음악을 전공한 사제가 있어야 한다는 편견이다. 그러한 사제가 있다면 더 할나위 없이 바람직하고 좋은 일이겠으나 성음악의 근본은 전례와 신앙이지 음악이 아니다. 음악적 지식이나 정보 및 연주등은 평신도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는 것으로 충분하다. 사목자에게 맡겨진 중요한 몫은 그러한 것들이 우리 신앙과 전례에 합당한 것인지 혹은 시대에 따른 교회의 사목방향에 발 맞추는 것인지에 대한 판단 같은 것들이다. 인사가 만사라는 말이 있듯이 성음악 분야에 있어서 위원회를 담당하는 사목자의 중요한 역할은 개인적 호불호를 떠나 교회에 올바른 애정을 가진 여러 평신도 전문가들을 불편부당함 없이 두루 참여시켜 그들의 의견에 귀 기울이며 지혜롭게 활용하여 교구장의 사목을 보좌하는 데 있는 것이다.